

##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

[시행 2026.01.01]  
( 제정) 2025.04.25 조례 제1797호

관리책임부서명 : 평생학습계  
관리책임전화번호 : 051-550-4462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초등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제1호, 제4호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.
2. “입학축하금”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)**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.

**제4조(지원금액 및 방법)**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입학축하금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.

③ 구청장은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
2.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

**제5조(지원절차)** ①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자의 친권자,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② 그 밖의 입학축하금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환수)**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**부 칙<조례 제1797호, 2025.4.25.>**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